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기금 여유자금의 5%를 벤처투자에 활용 등〉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257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기금 여유자금의 5%를 벤처투자에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63조제2항 신설)	3
2. 연기금투자폴 운용주체로 한국벤처투자 추가(안 제81조)	11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윤준병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5. 8. 20.

다. 회 부 일 : 2025. 8.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각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에서는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투자 또는 출자할 수 있는 기금은 현행법에 따른 전체 법정기금 중 일부에 불과하며 기금 자산 중 10% 이내의 범위에 국한하고 있어 제도적인 한계가 존재함. 더욱이, 법정기금의 여유자금만 1,400조 원 규모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미래경제를 이끌어 나갈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미진하여 법정기금이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금관리주체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

의 여유자금을 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벤처투자에 우선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기금자산운용의 원칙을 세우고,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
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
정된 금융기관 또는 한국벤처투자에 통합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임(안 제63조제2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기금 여유자금의 5%를 벤처투자에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63조제2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 기금자산운용의 원칙 - 기금관리주체는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함 < 신 설 > - 기금관리주체는 자산운용지침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여야 함	○ 기금자산운용의 원칙 - (현행과 같음) -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 여유자금의 5퍼센트 이상을 벤처투자에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이 경우 기금관리주체는 여유자금 운용을 한국벤처투자에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현행과 같음)

현행법¹⁾은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자산운용지침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도록 하고 있음.

자산운용지침²⁾은 기금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

1) 「국가재정법」 제63조(기금자산운용의 원칙) ①기금관리주체는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관리주체는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자산운용지침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③기금관리주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기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

2) 「국가재정법」 제63조(기금자산운용의 원칙) ①기금관리주체는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관리주체는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자산운용지침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③기금관리주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기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

제74조(기금운용심의회) ①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를 설

는 지침으로, 투자결정 및 위험관리, 투자자산별 배분, 자산운용 실적의 평가 및 공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동 지침은 현행법상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 및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해짐.

개정안은 기금의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기금 여유자금의 5퍼센트 이상을 벤처투자에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용을 한국벤처투자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금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제79조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제76조(자산운용위원회) ① 기금관리주체는 자산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회에 자산운용위원회(이하 “자산운용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제13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이나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금의 경우에는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77조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 전담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2. 제79조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자산운용 전략에 관한 사항
4. 자산운용 평가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산운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③자산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금관리주체의 장이 기금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금관리주체 및 수탁기관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79조(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①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의 자산운용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할 때에 준수하여야 할 지침(이하 “자산운용지침”이라 한다)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이를 14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산운용위원회의가 설치되어 있는 기금은 심의회의 심의 전에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심의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기금의 경우에는 기금관리주체가 직접 자산운용지침을 정하여야 한다.

③자산운용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투자결정 및 위험관리 등에 관련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2. 투자자산별 배분에 관한 사항
3. 자산운용 실적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항
4. 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5. 자산운용과 관련된 부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6. 그 밖에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기금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24년 연평잔을 기준으로 69개 기금의 여유자금은 총 1,222조원 규모이며 사회보험성기금(6개)의 여유자금이 총 1133조원, 금융성기금(8개)의 여유자금이 총 38조원, 계정성기금(4개)의 여유자금이 총 13조원, 사업성기금(50개)의 여유자금이 총 37조원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이 중 1,063조원은 국민연금기금의 여유자금으로, 전체의 87%를 차지하고 있음³⁾.

개정안과 같이 기금별 여유자금 중 5퍼센트 이상을 벤처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이처럼 2024년 연평잔 기준으로 전체 기금의 여유자금이 1,222조원 규모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한 규모의 벤처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그 취지가 타당한 측면이 있음.

특히 정부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벤처투자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펀드를 결성하여 중소·벤처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⁴⁾에 따라 설립된 한국벤처투자⁵⁾가 이러한 모태펀드를 운용하고 있음.

3) 참고자료1 참조

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한국벤처투자의 설립 등) ① 창업기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성장·발전을 위한 투자의 촉진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벤처투자를 설립한다.

5) 2025년 기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5년에 동 모태펀드에 출자하는 것으로 편성된 예산은 총 1조 446억원으로, 중소벤처기업부(5,000억원), 문화체육관광부(3,430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1,255억원) 등 7개 부처에 동 출자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또한, 동 모태펀드가 처음 결성된 2005년부터 2025년까지 해당 모태펀드에 출자하기 위하여 편성·집행된 예산은 총 10조 9,063억원에 해당하는 등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 부처 예산으로 매년 상당한 재정을 편성하여 투입하고 있음.

<중앙부처별 모태펀드 예산 출자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중기부	22,491	4,500	2,900	10,000	10,700	5,200	3,135	4,540	5,000	68,466
문체부	7201	910	940	1,770	2,178	2,528	2,475	3,450	3,430	24,882
과기부	1670	150	150	245	395	250	165	515	1,255	4,245
국토부	-	-	200	500	300	200	150	150	150	1,650
특허청	1,600	200	100	200	200	200	-	114	80	2,694
복지부	800	-	-	-	-	500	200	50	-	1,550
교육부	120	150	150	150	120	100	75	75	75	1,015
환경부	200	130	280	200	300	200	450	585	456	2,801
해수부	-	-	200	200	100	200	130	170	-	1,000
고용부	100	75	-	-	-	-	35	-	-	210
계	34,182	6,115	4,920	13,265	14,293	9,378	6,815	9,649	10,446	109,063

자료: 한국벤처투자

이러한 상황에서 기금별 여유자금 중 5퍼센트 이상을 벤처투자에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중앙부처별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벤처투자를 위한 모태펀드에 투입하지 않아도 기금의 여유자금만으로도 상당한 규모의 모태펀드 출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예산 절감 효과도 발생하는 등 긍정적 측면이 있음.

기획재정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현행법은 기금운용주체가 자율적으로 투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금 여유자금을 특정 분야나 자산에 우선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현행법⁶⁾은 기금운용주체가 자산운용지침을 정하고 자산운용위원회 심의 및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기금운용주체에게 그 자산운용에 대한 일정 부분 자율성을 부여한 것임.

그러나 개정안은 기금 여유자금의 5%라는 일부만을 벤처기업에 우

6) 「국가재정법」 제74조(기금운용심의회) ①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금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제79조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제76조(자산운용위원회) ① 기금관리주체는 자산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회에 자산운용위원회(이하 “자산운용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제13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이나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금의 경우에는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9조(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①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의 자산운용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할 때에 준수하여야 할 지침(이하 “자산운용지침”이라 한다)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이를 14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산운용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기금은 심의회의 심의 전에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선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며, 현행 법⁷⁾은 기금관리주체에게 자산운용시 공공성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개정안은 벤처투자 방식을 한정하지 않고 그 최소한의 비율만을 정하고 있어 그 방식은 기금운용주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이 기금운용주체의 자산운용 자율성을 과다하게 제한하여 현행법과 배치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다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고위험고수익의 특성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준수익률 이상의 고수익이 발생하여 기금 여유자금 운용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반면, 음(-)의 수익률이 발생하는 경우 기금 여유자금의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중소기업모태펀드의 계정·분야별 실제수익률 현황에 따르면 보건계정 내 글로벌제약분야는 실제 수익률이 40.99%로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기업진흥계정(이하 “중진계정”) 내 바이오 분야(16.05%), 미래창조분야(15.75%), R&D사업화분야(13.62%), 청년계정 내 청년창업분야(14.69%), 지방계정 내 지방기업분야(13.45%) 등이 높은 수익률을 낸 반면, 문화계정과 영화계정의 경우 실제수익률이 전부

7) 「국가재정법」 제63조(기금자산운용의 원칙) ①기금관리주체는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음(-)의 수익률을 기록하였으며, 문화계정의 글로벌콘텐츠분야의 경우 그 수익률이 △16.23%였음.

<중소기업모태펀드 계정·분야별 청산펀드 수익률 현황>

(단위: %)

계정명	출자분야	주요 투자대상	수익률
중진	1인창조	1인 창조기업, 창업후 3년 이내 창업기업	3.37
	LP지분유동화	벤처펀드의 LP 지분 인수	12.10
	R&D사업화	R&D기술사업화기업, 기술혁신형기업, 경영 혁신형기업 등	13.62
	대학창업	대학 및 대학생이 보유한 특허, 아이디어 사업화지원 관련 창업기업	13.11
	미래성장	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콘텐츠-SW 분야의 중소벤처기업	7.88
	미래창조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발행하는 신주 등	15.75
	바이오	바이오 분야 중소벤처기업	16.05
	성장사다리	설립 7년 미만 중소벤처기업 및 중견기업	6.47
	세컨더리	중소벤처기업의 구주 인수	14.7
	소재부품장비	소재부품장비 기업	△0.06
	스마트대한민국	비대면, 바이오, 그린뉴딜 분야	1.08
	신성장동력	녹색기술, 첨단융합, 고부가서비스분야 등 신성장동력 분야 기업	7.29
	인큐베이팅	창업 2년 이내 기업으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또는 입주예정 기업	△2.49
	일반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발행하는 신주 등	10.92
	일자리	매출 또는 종업원 수가 3개년 연평균 20% 이상 증가한 기업 등	1.69
	창업초기	창업 3년 이내 혹은 창업 후 매출 20억 이내의 창업초기기업	7.01
	해외진출	해외기업 또는 비상장 국내중소 또는 벤처기업중 해외진출기업	13.73
지방	지방기업	수도권 외 지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중소벤처기업 등	13.45
청년	청년창업	대표이사가 청년 혹은 임직원 중 청년 비중 50% 이상인 중소벤처기업 등	14.69
중진(고용)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등	5.26
문화	CG/3D	CG/3D	△6.69
	게임	게임	△7.94
	공연예술	공연예술	△0.93
	글로벌콘텐츠	글로벌콘텐츠	△16.23

계정명	출자분야	주요 투자대상	수익률
	문화산업	문화산업	△8.71
	문화산업투자	KVF 결성목적	△7.33
	융합콘텐츠	융합콘텐츠 기획개발	△6.83
	제작초기	제작초기	△9.64
영화	한국영화	기획개발단계 영화, 중저예산 영화 등	△4.05
과기	디지털콘텐츠	디지털콘텐츠 산업육성	14.48
특허	특허기술사업화	특허기술사업화	7.02
보건	글로벌제약	제약, 헬스케어	40.99

주: 1. 내부수익률(IRR) 기준

2. 실제수익률은 출자대상별 자펀드들의 중위수

3. 최근 5년간 청산된 펀드 기준

자료: 「중소기업모태펀드 등 정책펀드 종합평가」, 국회예산정책처, 2024.11.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기금별 여유자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1093호, 박정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2. 연기금투자플 운용주체로 한국벤처투자 추가 (안 제81조)

현 행	개 정 안
○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 기재부장관은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각 기금관리주체가 위탁하는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u>금융기관</u>으로 하여금 통합운용하게 할 수 있음 < 신 설 > < 신 설 >	○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 기재부장관은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각 기금관리주체가 위탁하는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u>금융기관 및 한국벤처투자</u>로 하여금 통합운용하게 할 수 있음 -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u>금융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과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을 고려하여야 함</u> 1. 재무상태 및 경영지표의 건전성 2. 수익률 등 자산운용의 성과 3. 자산운용 전략 및 계획의 적정성 4. 그 밖에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u>한국벤처투자를 선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과 창업기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성장·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투자전략 등을 고려하여야 함</u>

현행법⁸⁾은 기재부장관이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

8) 「국가재정법」 제81조(여유자금의 통합운용)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각 기금관리주체가 위탁하는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통합하여 운용하게 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7조(여유자금의 통합운용을 위한 금융기관의 선정 등) ①법 제81조에 따라 각 기금관리주체가 위탁하는 여유자금을 통합운용하는 금융기관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 및 경영지표의 건전성
2. 수익률 등 자산운용의 성과
3. 자산운용 전략 및 계획의 적정성
4. 그 밖에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81조에 따른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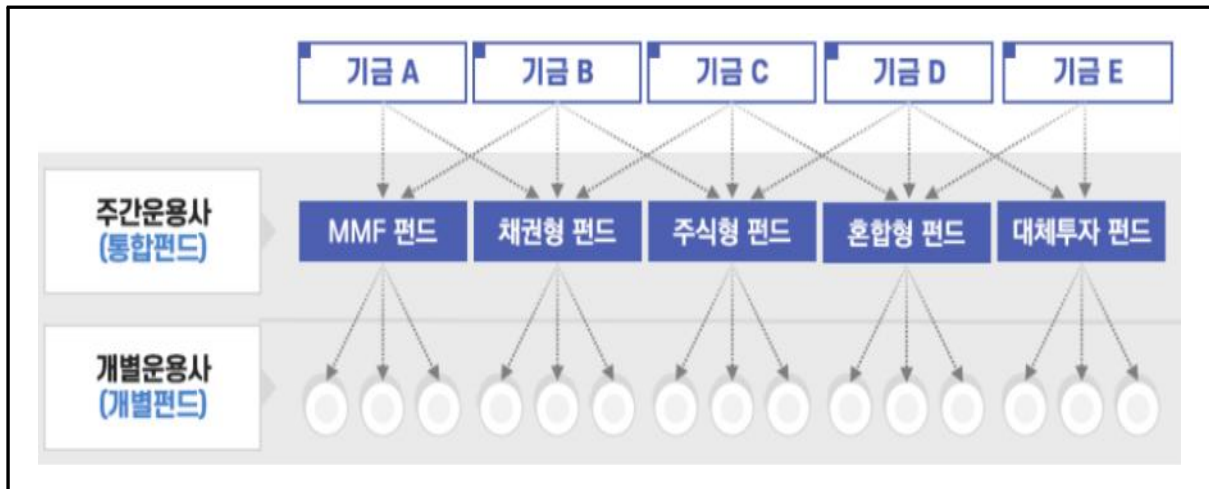
하여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통합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은 기획재정부가 2001년부터 운영하던 연기금투자품을 법률로 제도화한 것으로, 연기금투자품은 연기금 자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종전의 기획예산처에서 기금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2001년 12월에 도입하였음.

연기금투자품은 각 연기금들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여유자금의 운용수익률을 제고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 연기금투자품은 재간접투자방식(Fund of funds)으로 운영되는데,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할 통합펀드(상위펀드)와 금융시장에서 실제 운용되는 운용펀드(하위펀드)로 구성되어 있음. 개별 연기금은 투자기간, 투자상품 유형을 지정하여 통합펀드에 자금을 예치하고, 통합펀드의 주간운용사는 개별 연기금에서 기간과 유형을 결정하여 예치한 자금을 통합관리하며, 기금이 제시한 조건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개별운용사에 자금을 배정함. 또한 개별운용사는 주간운용사에서 자금을 수탁받아 주간운용사가 제시한 조건에 맞게 자산을 운용함.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연기금투자폴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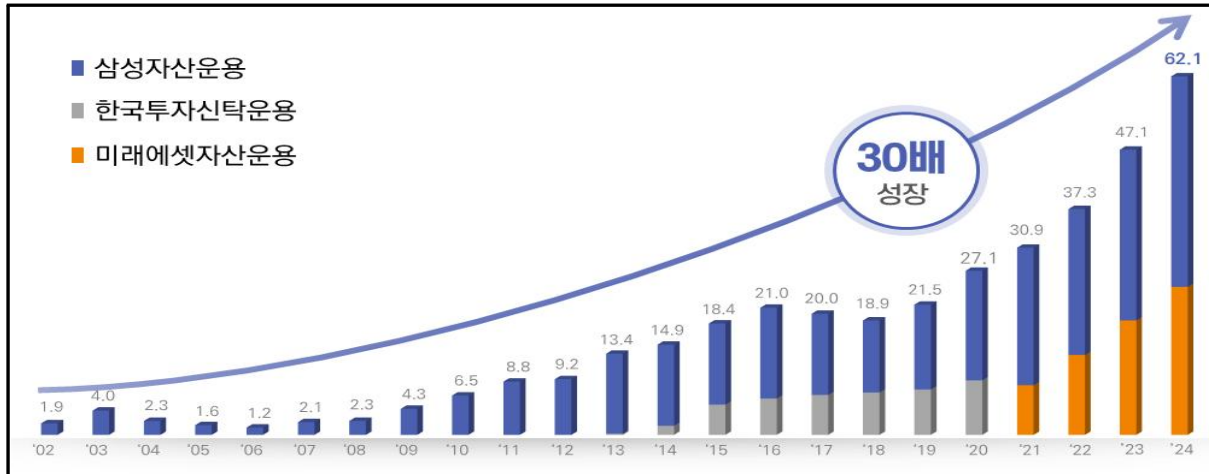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4년 기준으로 연기금투자폴의 규모를 살펴보면, 총 61개 기금이 연평균 기준 46.0조원을 연기금투자폴에 위탁하였으며, 54개 공공기관이 16.1조원을 위탁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이러한 위탁규모는 연기금투자폴이 도입되어 처음 운용된 2002년에 비해 위탁규모의 경우 약 30배(2002년 1.9조원→2024년 62.1조원), 위탁기관의 경우 약 2.4배(2002년 43개→2024년 115개) 증가하는 등⁹⁾ 그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9) “연기금투자폴 제도 개편 방안”,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연기금투자폴 위탁규모 추이(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이러한 연기금투자폴의 2024년 운용수익률은 5.28%이며, 2024년 기준으로 벤치마크¹⁰⁾(BM) 대비 초과수익률은 MMF 0.14%p, 채권형 0.30%p, 혼합형 0.66%p, 주식형 1.17%p으로 모든 통합펀드에서 초과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연기금 투자폴 운용수익률>

(단위: %, %p)

연도	전체	MMF	채권형	혼합형	주식형
2020	3.56	1.03 (+0.12)	2.47 (+0.35)	8.32 (+0.96)	18.47 (+1.06)
2021	1.49	0.83 (+0.11)	△0.20 (△0.12)	2.97 (+0.87)	19.14 (+2.50)
2022	△2.16	2.33 (+0.12)	△1.92 (△0.33)	△6.76 (+0.18)	△15.24 (+1.79)
2023	6.67	3.91 (+0.16)	5.99 (+0.59)	10.89 (+0.97)	21.44 (+1.44)
2024	5.28	3.73 (+0.14)	4.96 (+0.30)	6.61 (+0.66)	16.93 (+1.17)

주: 괄호 안은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률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10) 펀드의 투자 성과(수익률)를 비교·평가하는 기준수익률 (예: KOSPI 지수)

개정안은 이러한 연기금투자자를 통합운영하는 주간운용사에 한국 벤처투자를 추가함으로써 연기금투자자의 재원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고 혁신 성장에 기여하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연기금투자자 운용은 집합투자에 해당하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집합투자업자만 운용이 가능하나, 한국벤처투자는 현재 집합투자업자가 아니므로 주간운용사로 연기금투자자를 운용할 수 없으며, 근거 법률상 업무에도 집합투자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집합투자¹¹⁾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함. 연기금투자자 운용의 경우 여러 기금이나 기관의 여유자금을 통합펀드에 통합관리하고, 재간접투자를 한 후 그 수익을 각 기금이나 기관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므로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금융투자업) ⑤ 제4항에서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사모(私募)의 방법으로 금전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경우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전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경우
3. 그 밖에 행위의 성격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러한 집합투자에 해당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¹²⁾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가를 받아야 하나, 현행 한국벤처투자는 집합투자업에 대한 인가를 받은 상황이 아님. 특히 한국벤처투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¹³⁾에 따라 벤처투자모태펀드를 결성하여 운용 중이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¹⁴⁾은 이러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펀드의 운용·배분을 집합투자에서 제외하고 있어 한국벤처투자를 집합투자업자로 볼 수 없음.

또한, 한국벤처투자의 근거 법률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¹⁵⁾상 한국벤처투자의 사업은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및 집행,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7조(한국벤처투자의 사업 등) ① 한국벤처투자는 제66조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제7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
2. 벤처투자조합 결성과 업무의 집행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금융투자업) ⑤ 제4항에서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사모(私募)의 방법으로 금전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경우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전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경우
3. 그 밖에 행위의 성격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집합투자의 적용배제) ① 법 제6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1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7조(한국벤처투자의 사업 등) ① 한국벤처투자는 제66조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제7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
2. 벤처투자조합 결성과 업무의 집행
3. 벤처투자
4. 해외벤처투자자금의 유치 지원
5. 창업기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해외진출 지원
6. 벤처투자회사의 육성

벤처투자조합 결성 및 집행, 벤처투자 등 벤처투자와 관련된 업무로만 규정되어 있어 근거 법률에서도 벤처투자모태조합 외에 집합투자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처럼 연기금투자폴의 운용은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인가를 받은 집합투자업자만 가능하나, 한국벤처투자는 인가받은 집합투자업자가 아니라는 점 및 한국벤처투자의 설립 근거 법률에 벤처투자를 제외한 집합투자업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둘째, 공개경쟁을 거쳐 주간운용사로 선정되는 민간 금융회사와 달리 한국벤처투자를 주간운용사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공정성 논란 및 특혜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2025년 기준 연기금투자폴을 통합운용하는 주간운용사는 삼성자산운용 및 미래에셋자산운용 두 곳으로, 2021년부터 연기금투자폴의 주간운용사로 선정되어 있음.

연기금투자폴의 주간운용사는 과거 기획재정부 소속의 투자폴운영위원회가 추천한 평가위원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선정하였으나, 이러한 주간운용사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013년 9월 투

7. 벤처투자 성과의 관리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자폴 운영기관인 주간운용사 선정을 조달청에 위탁하여 선정하는 것으로 변경¹⁶⁾하였음. 이에 따라 현재까지 주간운용사는 기획재정부가 조달청에 위탁하여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되고 있음.

또한 기획재정부는 최근(2025.7.) 투자폴운영위원회에서 주간운용사 선정을 위한 경쟁을 확대하도록 평가 기준·절차를 개선하였음¹⁷⁾. 기존에는 주간운용사 선정 기준이 사실상 자산운용사에게만 적용됨에 따라 자산운용사들만이 주간운용사로 선정되기 위해 경쟁하는 제한 경쟁입찰이었으나, 제한된 경쟁 구조에 따른 주간운용사 성과제고 유인 약화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는 자산운용사 뿐만 아니라 증권사도 입찰이 가능하도록 평가 기준 및 절차를 개선하였음.

개정안은 연기금투자폴 주간운용사에 한국벤처투자를 추가하고 있는데, 이처럼 민간의 경우 공개경쟁을 통해 주간운용사로 선정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벤처투자를 이러한 공개경쟁에 따르지 않은 채 주간운용사로 명시하는 것은 민간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과의 형평성 및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경쟁 절차를 거치지 않음에 따라 연기금투자폴의 성과 제고 유인이 약화될 우려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셋째, 한국벤처투자를 주간운용사에 포함하지 않아도 개별펀드의 운

16) “연기금투자폴 운영기관 선정제도 개선”,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3.9.

17) “연기금투자폴 01년 출범 이후 최초 벤처투자 시행”,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5.7.

용사로 지정하는 경우 벤처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으므로 현행법 개정 없이도 개정안의 취지는 어느정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한국벤처투자를 연기금투자자의 주간운용사로 지정함으로써 연기금투자자 내 여유자금의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임. 그러나 현행법을 체계 하에서도 연기금투자자에 여유자금을 예탁한 기금이 벤처투자를 위한 개별 펀드에 투자하기로 하는 경우 한국벤처투자가 이러한 개별 펀드의 운용사로 지정되어 벤처·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투자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실제 최근 무역보험기금은 연기금투자자 내 여유자금 200억원을 중소기업모태펀드(200억원)와 공동 출자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405억원¹⁸⁾ 규모의 'LP 첫걸음 펀드'를 조성하기로 하였으며, 한국벤처투자가 해당 펀드의 개별운용사로 운용할 예정임¹⁹⁾.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연기금투자자 운용주체에 한국벤처투자를 추가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1093호, 박정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18) 무역보험기금의 연기금투자자 내 여유자금 200억원 + 중소기업모태펀드 200억원 + 한국벤처투자(GP; 위탁운용사) 5억원

19) 참고자료2 참조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3조(기금자산운용의 원칙) ① (생략) <u><신설></u>	제63조(기금자산운용의 원칙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기금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여유자금을 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벤처투자에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관리주체는 여유자금 운용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이하 “한국벤처투자”라 한다)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81조(여유자금의 통합운용)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각 기금관리주체가 위탁하는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통	제81조(여유자금의 통합운용) ① ----- ----- ----- ----- ----- -----금융기관 또는 한국벤처

현 행	개 정 안
합하여 운용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u>투자</u>로-----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과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 및 경영지표의 건 전성 2. 수익률 등 자산운용의 성과 3. 자산운용 전략 및 계획의 적 정성 4. 그 밖에 효율적인 자산운용 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국벤처투자를 선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과 창업기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성장·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투자전략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문 의 처
02)6788-5157

참고1

최근 3년간 기금별 여유자금 현황(연평균 기준)

(단위: 십억원)

기금명	2022년	2023년	2024년
총계(69개)	1,130,095	1,081,684	1,221,967
사회보험성기금(6개)	1,028,054	993,016	1,133,141
고용보험기금	6,647	7,273	8,462
공무원연금기금	8,785	8,579	10,556
국민연금기금	966,044	931,097	1,063,037
군인연금기금	1,176	965	902
사립학교교직원연금	23,630	21,695	24,246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21,772	23,407	25,938
금융성기금(8개)	32,361	35,762	38,415
기술보증기금	3,642	3,737	3,736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862	1,929	1,904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1	4	3
무역보험기금	4,353	4,966	6,133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896	943	1,049
신용보증기금	11,775	12,692	13,265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1,403	1,843	1,25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8,428	9,650	11,073
계정성기금(4개)	11,455	16,105	12,982
공공자금관리기금	10,896	15,835	12,731
공적자금상환기금	256	32	26
복권기금	218	168	173
양곡증권정리기금	85	70	53
사업성기금(50개)	58,226	36,802	37,429
과학기술진흥기금	22	24	29
관광진흥개발기금	496	220	140

기금명	2022년	2023년	2024년
국민건강증진기금	484	797	492
주택도시기금	42,971	20,141	18,648
국민체육진흥기금_국민체육진흥계정	1,235	1,696	2,575
국민체육진흥기금_ 사행산업중독예방지유계정	15	21	26
국유재산관리기금	924	1,333	1,746
국제교류기금	62	77	80
군인복지기금	664	729	794
근로복지진흥기금	123	103	82
금강수계관리기금	31	34	18
낙동강수계관리기금	6	6	6
남북협력기금	154	175	181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04	89	51
농어업재해보험기금	140	350	313
농지관리기금	1,059	280	318
대외경제협력기금	155	207	130
문화예술진흥기금	127	97	76
문화재보호기금	15	14	17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3,366	3,863	4,329
방송통신발전기금	133	153	156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8	43	40
보훈기금	129	113	103
사학진흥기금	76	101	104
석면피해구제기금	6	5	10
수산발전기금	135	134	222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80	88	52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66	186	520
언론진흥기금	22	25	20

기금명	2022년	2023년	2024년
양성평등기금	31	55	66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47	56	64
영화발전기금	60	55	25
원자력기금_연구개발계정	11	7	29
원자력기금_안전규제계정	149	181	184
응급의료기금	135	170	370
임금채권보장기금	641	556	61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145	94	1,593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1,381	1,420	855
전력산업기반기금	589	671	267
정보통신진흥기금	145	204	101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101	103	8
지역신문발전기금	6	7	9
청소년육성기금	13	9	89
축산발전기금	149	163	40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33	44	16
한강수계관리기금	71	54	1,718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1,346	1,476	203
사법서비스진흥기금	57	87	123
국제질병퇴치기금	8	9	-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142	102	106
기후대응기금	151	177	227

자료: 기획재정부

참고2

LP 첫걸음 모펀드 개요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펀드개요)** 한국벤처투자가 국내 벤처투자 시장 참여 주체 확충*을 위해 조성 예정인 최초출자자 전용 벤처펀드

*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 방안(‘24.10.2, 경제관계장관회의)) 벤처투자조합 출자 경험이 없는 연기금, 금융사, 기관 투자자 등이 참여할 수 있는 ‘LP 첫걸음 펀드’ 신설

- **(규모)** 총 405억원* 모펀드 결성 목표

* 모태펀드 200, 최초출자자(연기금, 금융사, 기관투자자 등) 200, 한국벤처투자(GP) 5억원 (모태펀드 출자금은 최대 200억원이며, 최초출자자 모집금액에 1:1 비례할 예정)

- **(존속기간 / 투자기간)** 12년 / 5년

- **(기준수익률)** 7%

- **(보수율)** 관리보수 0%, 성과보수 기준수익률(7%) 초과수익의 10%

* 연기금투자자 풀 통합펀드 보수율은 4.8307bp

- **(인센티브)** 최초출자자 대상으로 손실 가능성을 낮추고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

* 손실가능성 감소를 위한 ①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 ②풋옵션 기본 제공 및 수익률 제고를 위한 ③초과수익이전 또는 ④콜옵션 제공

- **(투자방식)** 공동출자 및 모펀드 결성 후 한국벤처투자(GP)가 출자사업 공고·제안서 접수 및 투자대상 벤처투자조합 선정

